

2015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

I. 2015년 재정운 여건과 방향

1 지방재정 여건

1. 세입전망

- (지방세)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**점진적으로 증가할** 것으로 예상되나
 -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**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곤란**

- (세외수입)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**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**

- (지방교부세) 내수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**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**,
 - 내국세 결손에 따른 **교부세 정산분 감액**과 대·내외 **경제상황의 불확실성** 등으로 **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**

- (국고보조금) 기초연금, 영유아 보육, 일자리 확충, 취약계층 지원 등 **정부의 복지정책 확대**에 따라 **재정소요는 지속 증가될 전망**

우리도 세수확보 여건

- ◆ 지방세는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과,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에 힘입어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, 큰 폭의 세수증가 여부는 불투명
 - ◆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으로 전년도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⇒ 2015년도 세입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증가 전망

2. 세출전망

□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

-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
-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,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
- 영유아보육, 어린이집 확충,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,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·고령사회 대비
- 사회복지공무원 확충,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허브기관화 등으로 수요자·현장 중심의 One-stop 서비스 강화
-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 확대
- 문화·예술, 체육, 콘텐츠산업 등과,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

□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

- 새로운 공약사업 착수와 도로·교량·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
-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
- 자연환경 조성,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, 상·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

우리도 투자재원 여건

- ◆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의 도정목표 실현과 민선6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와
- ◆ 기초연금, 영유아보육,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⇒ 세입 대비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여력 약화 예상

2 2015년도 재정 운용 방향

지방재정운용 목표

건전한 재정운용, 행복한 도민

재정운용 기본방향

-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용
-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생활 안정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

재정원칙 준수

- ◆ 지방재정 운용 기준 준수
- ◆ 지방채무 건전성 확보
- ◆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

도민생활 안정

- ◆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 추진
- ◆ 모두가 행복한 평생 복지
- ◆ 안전관리 기능 강화

성장기반 강화

- ◆ 지역경제 활성화
- ◆ 신성장 동력 확보
- ◆ 자체재원 확충 강화

II. 2015년 예산편성 방향

1 재정운영의 중점

- ◆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,
- ◆ 道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 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「신수도권의 중심,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」 실현 적극 지원

□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의 실현기반 구축에 주력

- 국가재정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사업과 道 현안사업 등 **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에 집중투자**
-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, 신규사업은 **민선6기 공약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에 투자**
-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실현,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 등 **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**

□ 「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」 사업 지속 투자

-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**다양한 서민복지정책 사업에 재정지원 강화**
- **저소득·취약계층** 취업지원 등 **자립지원과 9988 행복바우처 사업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강화**
- 물가 안정,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, 골목상권 보호 등 **도민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지속 투자**
- 맞춤형 일자리 창출, 투자유치 확대 등 **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**

□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

- 창조적 R&D투자, 신산업 육성 등 **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**에 투자
-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, 화장품·뷰티산업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**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**
- **2015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개최 지원**과 종자·생명산업 투자확대 등 **농업의 신성장 동력화**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

□ 안전관리 기능강화로 도민생활 안정

- 소방,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**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 우선지원**
- 어린이, 여성, 노인 등 **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**과 재난·재해 등에 **선제적으로 대응**
-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등 **안전관리 기능 강화**

□ 책임과 성과 중심의 「효율적 재정 운영」 강화

- 모든 사업은 **원점(zero-base)에서 분석·점검**,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**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실시**
-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 범위내 편성과 **일몰제를 엄격히 적용**
- **행사·축제성 경비**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,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
-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**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**하고, 불요불급한 경비 등 **경상경비는 획기적 절감 추진**
- 지방채는 **고금리채 차환**과 여유자금 발생시 지방채 **조기상환**으로 지방채무구조 적극 개선

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

- 근거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
-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
□ 예산편성 원칙

- ▶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
 -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, 국가기관(시설) 설립비 등 포괄적·일반적 예산편성 금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**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**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**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**(2016회계연도부터 적용)
- ▶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
- ▶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
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 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 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 -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▶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, 보조금으로 편성·집행하지 않도록 유의
- ▶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- ▶ 일몰도래사업,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, 보조단체의 운영·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
- ▶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

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

- ❖ 「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(308-06)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

3 지방보조금 한도액 운영

□ 경비성격

-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

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

- (대상)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- (운영)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에서 예산편성

보조금 총한도액

- ❖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(총한도액) $\times(1+\text{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})$
 -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 - * 적용기준 : 일반+기타특별회계
 - ※ '14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= 민간이전보조금 한도액+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+ '11~'13년도 민간자본보조 최종예산 평균액(순지방비분)+'14년도 분권교부세사업 보조금 최종예산액
 - ※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= 전전년도, 전전전년도,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
 - 보조금 예산은 국·시·도비 보조금(지방비 부담금 포함)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

- ▶ 「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국제행사, 전국단위 및 시·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(전국체전 등)와 국고보조금, 시·도비보조금(해당 자치단체 부담분, 지자체 매칭펀드사업*지방비 부담분 포함) 등은 제외

- *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, 세부사업명 옆에 “(국가직접지원)”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

- ▶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(시·군·구는 시·도)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

□ 관리기준 등

- 보조금 예산의 편성,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, 정산 및 성과평가,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호조)을 통한 이력관리, 취소 및 반환,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

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관리

□ 기본원칙

-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
-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·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여 예산 편성

□ 성과계획서 작성

- 조직의 미션, 실국단위 전략목표, 정책사업목표,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

※ '14년까지 성과예산서를 시범편성 하였으나 '15년부터 성과계획서로 변경

□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 기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앞서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시범적으로 작성

※ 시범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음

- 성과계획서 작성방법, 성과지표 설정 방법,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으로 통보 예정

※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,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

-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창조전략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 성과지표 등을 마련

Ⅲ. 2015년 예산편성 지침

1 예산편성 기본 방향

- ◆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도정 주요 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예산 편성
- ◆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준수

1. 세입예산 편성

① 지방세

- 2015년도 지방세 징수 가능액 전액 계상
- 과다·과소 계상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경제상황 및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

② 세외수입

-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계액 정확히 계상
- 징수가능한 수입액은 전액 계상

③ 지방교부세

- 2015년 산정결과 및 안전행정부 통지액 반영
- 예산편성 기간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 내국세 증감을 및 우리도 점유율 등을 감안 추계하여 계상

④ 국고보조금(지특, 기금 포함)

- 소관 중앙부처 예산안 계상(예산안 통지 : 10.15까지)
- 소관 부처의 통지가 없을 경우 추계하여 반영
 - 법정·의무적 경비(사회복지비 등),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

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

- 재정건전 운영을 위해 최소경비 범위내에서 적정액 계상

2. 세출예산 편성

경상경비 최소화 ⇨ 투자재원 최대 확보

- ◆ 각종 행사·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는 zero-base에서 검토
- ◆ 관행적·낭비적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
- ◆ 불요·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

① 공통사항

-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전액 계상
- 업무추진비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훈령으로 정한 기준액 준수
- 사전절차를 이행하고,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만 반영
- 신규(보조)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을 대체 또는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, 유사중복 지원여부, 자부담 능력여부, 사업 성격상 보조사업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방침 결정(지사님 결재) 후에 예산 요구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중 기준외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준수(자원판단후 예산담당관 조정)
- 지방보조금(민간보조금, 시군보조금 등) 예산편성 원칙
 -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편성(근거가 없는 경우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불가)
 -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(2016회계연도부터 적용)

② 행정운영경비

- **인력운영비** :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상 소요를 판단 요구
- **기본경비** :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경비('14년 수준 유지)
※사업성격의 일반수용비, 특정수요 여비 등은 사업에 포함 편성

< 기본경비의 범위 >

- 201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)
- 202 여비(국내여비)
- 203 업무추진비(기관운영, 정원가산, 부서운영)
- 204 직무수행경비(직책급업무추진비)
- 405 자산취득비(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)

③ 사업예산

-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·융자사업으로 심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원칙 견지
-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 등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지양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
- 지역개발 및 도로건설 등은 투자속도를 조절하고 민선6기 공약 사업 추진과 도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
- 일회성·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인정하고, **과 연찬회 경비는 예산편성 제외**
- 민간이전경비는 부서별 한도액 설정 배분후 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정

④ 기타사항

-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는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
- 여유재원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여 지방채무 구조 적극 개선

4 2014년과 달라지는 예산제도

1.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시행

- 예산의 ‘성과계획서’ 작성이 의무화되고, 자치단체의 ‘주요 재정사업 평가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
 - 성과계획서 : 2015년도 시범작성, 2016년도 본격시행
 - 주요 재정사업 평가 : 2015년도부터 시행
- *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지침으로 통보 예정

2. 민간이전경비(보조금) 기준 개정

- 예산의 편성,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, 사업자 선정, 성과평가, 이력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
 -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.
- *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
- 보조금 한도제 개선 등을 통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
 - 한도액 적용대상에 ‘민간자본보조’를 추가 포함

현 행	개 선
▶ 민간이전경비 - 민간경상, 민간행사, 사회복지보조 ▶ 사회단체보조	▶ 총액한도제(민간이전경비+사회단체보조) - 민간자본보조 추가 포함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편성(2015년도부터 적용)
- ※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(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) 지원 불가
-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(2016년도부터 적용)

3. 일·숙직비 기준 개정

- 기준액 : 1일(야)당 5만원 이내
 - 다만, 기준액은 근무여건,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%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
- ※ 다만,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·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,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일당 3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4. 월액여비 기준경비 개정

-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기준액을 실제 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(월 138,000원 → 150,000원)

5.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 개정

- 의원 1인당 2,000천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나, 개인별로 정액 지급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 산정방식 개선
 - 현행 : 의원 1인당 2,000천원 → 변경 : 의원정수×기준액 2,000천원
-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% 범위내에서 자율조정

6.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경비 개정

-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'특별위로금'을 지급토록 소방공무원법 개정(공포 2014. 6. 11. 시행 2014. 12. 12)
- '특별위로금'은 직원의 사기진작 성격의 경비이므로, 현행 '정원가산업무추진비'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

7. 세입·세출 예산과목 및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개선

- 세입·세출예산 과목설정 개선
 - 안전행정부 세입·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참고
- '재난방재·민방위'부분을 '재난방재·민방위와 '소방' 부분으로 세분화
 - ※ 반드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부문 및 과목에 편성

IV. 향후 추진일정

□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시달회의

- 일 시 : 2014. 8. 27(수) 15:00
- 장 소 : 농업기술원
- 참 석 : 실·과·소 주무팀장, 예산담당자
- 내 용 :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설명

□ 세입·세출예산 요구

- 실·과·소 사업구조화 정리 : 8. 7일까지
- 세입·세출예산요구서, 중앙지원사업조서, 사업설명서 : 9. 4 까지
- 부서별 인력운영비(총액인건비) : 엑셀서식 별도 통보
- 재정관리시스템 입력 및 기타서식 : 9. 4 까지

□ 세입·세출예산안 확정

- 예산 보고서 작성 및 예산안 확정 : 10. 31한
- 예산안 편제 및 의회 제출 : 11. 10한